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를 각각 “저압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아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각각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

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전기설비 검사항목”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제31조제5항 중 “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 중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제2호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원 배치확인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시적으로 사용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긴급히 전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그 전기설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중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1조 및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제2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가)(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별표 5 제1호나목2)가)(4)(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별표 5 제1호나목2)다)(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의 설치 또는 대체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 제3항 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변경 인가 신청·변경 신고	법 제61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법 제6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법 제61조 제3항 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 식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비 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별표 9 제7호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를 “발전소”로 한다.

별표 9 제10호 중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를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로 하고, 제10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9 제11호 중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를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로 하고, 제1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9 제12호 중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를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로 하고, 제1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10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

법」 제61조”로 하고,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별지 제25호 서식 중 첨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별지 제26호 서식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별지 제26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시·도”로 하고, 첨부 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삭제하며,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

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본”으로 하고, 제2호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감리원 배치확인서”로 하며, 수수료란 중 “「전기사업법」 제97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로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중 “검사확인증”을 “사용전검사확인증”으로 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 서식부터 제52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전기수용설비</u>”란 수전설비와 <u>구내배전설비</u>를 말한다.</p> <p>6. “<u>수전설비</u>”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u>구내발전설비</u>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u>구내배전설비</u>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u>수전지점</u>으로부터 배전반(<u>구내배전설비</u>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p> <p>7. “<u>구내배전설비</u>”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u>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u>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p> <p>8. ~ 10.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8. ~ 10. (현행과 같음)</p>
<p>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p>	<p>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 ----- ----- -----</p>

<p>1. <u>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u></p>	<p>1. <u>저압에 해당하는</u>----- ----- ----- ----- ----- ----- ----- ----- ----- -----</p>
<p>2. <u>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p>	<p>2. <u>저압에 해당하는</u> ----- ----- ----- ----- -----.</p>
<p>1. <u>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u></p> <p>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u>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u>」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p>	<p>1. <u>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u></p> <p>2. ----- ----- ----- 가. 「<u>충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 -----</p>

<p>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 라.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 사. (생략) 아.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에 따른 집회장 ③ (생략)</p>	<p>-----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 ② (생략) ③ <u>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7과 같다.</u> ④ <u>법 제6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p>	<p>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p>
<p>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u>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u></p>	<p>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u>법 제61조</u>-----</p>

<p>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u>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u>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p> <p>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u><신 설></u></p> <p>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u>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u>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p> <p>④ (생략)</p> <p>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u>법 제74조</u>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u>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u></p> <p>2. 「<u>전력기술관리법</u>」 제2조제3</p>	<p>③ ----- -----.</p> <p>1. ----- --- <u>법 제61조</u>----- -----</p> <p>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p> <p>3. 「<u>전기안전관리법</u>」 제18조에 따른 <u>검사·점검의 방법·절차</u> 등에 적합할 것</p> <p>4. ----- ----- <u>전기설비 검사항목</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u>전기안전관리법</u>」 제30조----- -----.</p> <p>1. <u>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u></p> <p>2. -----</p>
--	--

<p>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u></p> <p>3. ~ 4. (생략)</p>	<p>----- ----- <u>감리원 배치확인서</u>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u>법 64조제2항</u>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② ~ ③ (생략)</p>	<p>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일시적으로 사용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긴급히 전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그 전기설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p>	<p><u><삭 제></u></p>
<p>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u>법 제63조 및 법 제65조</u>에 따른 검사는 「<u>국가기술자격법</u>」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p>	<p>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u>법 제63조</u>----- ----- -----</p>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생략)	<삭제>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 ④ (생략)	<삭제>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 ③ (생략)	<삭제>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 ② (생략)	<삭제>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 ⑤ (생략)	<삭제>
제45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략)	<삭제>
제45조의3(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생략)	<삭제>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 ② (생략)	<삭제>
제46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삭제>
제46조의3(변경등록 등) ① ~ ② (생략)	<삭제>
제46조의4(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생략)	<삭제>

제47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 ② (생략)	<삭제>
제50조의2(보고) ① ~ ② (생략)	<삭제>
제50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 ③ (생략)	<삭제>
제51조(수수료 등) (생략)	<삭제>
제52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생략)	<삭제>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2017년 1월 1일 8.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 ----- ----- -----

신·구조문대비표(별표·별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 2015년 1월 1일	<삭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1) 수력설비 (2) 기력설비 (가) ~ (다) (라) 공해방지 설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1) 수력설비 (2) 기력설비 (가) ~ (다) (라) 공해방지 설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 ~ (바) (3) 가스터빈설치 (4) 복합화력 설비 (가) ~ (라) (마) 공해방지 설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 ~ (바) (3) 가스터빈설치 (4) 복합화력 설비 (가) ~ (라) (마) 공해방지 설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삭제>
(바)~(사)	(생략)	(생략)	(바)~(사)	(생략)	(생략)
(5)~(7)	(생략)	(생략)	(5)~(7)	(생략)	(생략)
나) 발전기계 통설비	(생략)	(생략)	나) 발전기계 통설비	(생략)	(생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략)	(생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략)	(생략)
(1) 태양광 설비	(생략)	(생략)	(1) 태양광 설비	(생략)	(생략)
(2) 연료전지 설비	(생략)	(생략)	(2) 연료전지 설비	(생략)	(생략)
(가) 연료 전지	(생략)	(생략)	(가) 연료 전지	(생략)	(생략)
(나) 전력 변환장치	(생략)	(생략)	(나) 전력 변환장치	(생략)	(생략)
<신 설>			(다) 보조 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4)	(생략)	(생략)	(3)~(4)	(생략)	(생략)
2. 전기수용설비	(생략)	(생략)	2. 전기수용설비	(생략)	(생략)

[별표 7]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생략)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제29조 관련)

1. 제출서류

구분	제출 대상	서식	첨부 서류
----	-------	----	-------

<삭제>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제29조 관련)

1. 제출서류

구분	제출 대상	서식	첨부 서류
----	-------	----	-------

		기관			
인가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법 제62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신 설>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 기술검토서
	법 제61조 제3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삭제> <삭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62조제2항 전단	시·도지사	별지 제26호서식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삭제>
	법 제61조제1항 후단 법 제62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신 설> 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삭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6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신 설> 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삭제>
	법 제61조 제3항 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삭제>

		원 부 장 관	
법 제61 조 3 항 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산 업 동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나.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법 제62조제2항 후단		호 서 식	
법 제62조제2항 후단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전기 안전 공사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비 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만 킬 로 와 트 미 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 만 볼트 미만인 송 전 · 변 전 설 비	시 · 도 지 사	
<삭 제>		< 삭 제 >	
<삭 제>			<삭 제>
비 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삭 제> 3.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바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바목의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생 략)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현행과 같음)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제31조제4항 관련)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 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가. ~ 다. (생 략)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가. ~ 다. (현행과 같음)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신 설> <신 설>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신 설>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가.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

<p><신 설></p> <p>12. <u>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u></p> <p><신 설></p> <p><신 설></p> <p>13. (생 략)</p>	<p><u>비가 완료된 때</u></p> <p><u>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u></p> <p>12. <u>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u></p> <p><u>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u></p> <p><u>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u></p> <p>13. (현행과 같음)</p>
<p>[별표 1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2제1항 및 제2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1] 일반용전기설비 및 전동시장 점포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및 제38조의2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5]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46조제1항 관련)</p>	<p><삭 제></p>

<p>(생 략)</p> <p>[별표 15의2]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6조의4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50조의2제1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8]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제50조의2제2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19]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제50조의3제1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20]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50조의3제2항 관련)</p> <p>(생 략)</p>	<p><삭 제></p>
<p>[별표 21]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51조 관련)</p> <p>(생 략)</p>	<p><삭 제></p>

공사계획 [] 인가 [] 변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공사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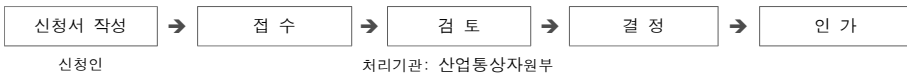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첨 부 요 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공사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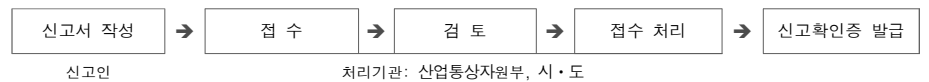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첨 부 요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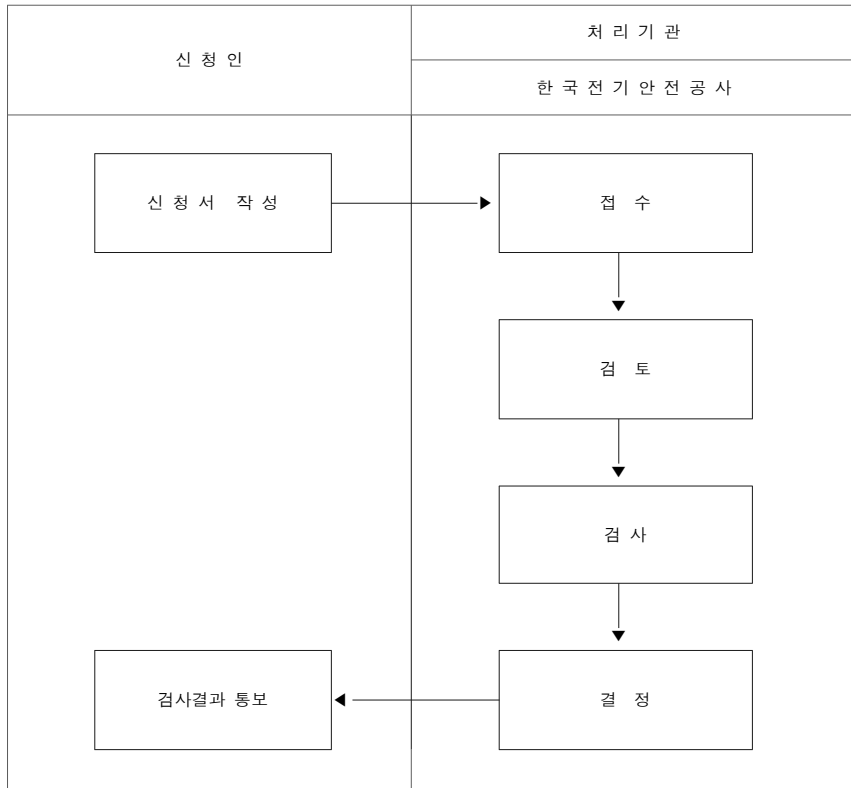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사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판정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기타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검사신청인 귀하

작성방법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30호 서식] 정기검사 신청서 (생략)	<삭제>
[별지 제31호 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 (생략)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사용전점검확인증 (생략)	<삭제>
[별지 제33호 서식]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생략)	<삭제>
[별지 제34호 서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생략)	<삭제>
[별지 제36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생략)	<삭제>
[별지 제37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생략)	<삭제>
[별지 제38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서 (안전공사, 대 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생략)	<삭제>
[별지 제39호 서식] 기술인력별 전기 설비담당 현황 (생략)	<삭제>
[별지 제40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	<삭제>

명서	
[별지 제41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증 명서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생략)	<삭제>
[별지 제42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생략)	<삭제>
[별지 제43호 서식]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 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 인대행자)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 서, 신고서, 변경신고서] (생략)	<삭제>
[별지 제44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업 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 대행자)등록증(신고증명서) (생략)	<삭제>
[별지 제45호 서식] 재난예방점검비 용 지급신청서 (생략)	<삭제>
[별지 제46호 서식]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년도) (생략)	<삭제>

[별지 제47호 서식]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생 략)	<삭 제>
[별지 제48호 서식]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결과보고(년도) (생 략)	<삭 제>
[별지 제49호 서식]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생 략)	<삭 제>
[별지 제50호 서식] 일반용전기설비점검(사용전점검) 결과 및 전기공급 정지 현황(년도) (생 략)	<삭 제>
[별지 제51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생 략)	<삭 제>
[별지 제52호 서식]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생 략)	<삭 제>